

제재내용 공시

1. 조합명 : 고창군수협

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6. 02. 09.

3. 제재조치(요구)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직원	견책(4명), 경고(5명)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4. 제재대상 사실

대출비율 상향 부적정

- 기업시설자금대출 취급하며 부분분할상환 조건 대출비율 상향시 계산 착오로 적정담보여력 대비 초과하였고 이후 연체가 발생하여 담보물 임의경매 진행 후 낙찰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였음.

기업시설자금대출 취급 부적정

- 부동산신탁수익권 담보 부동산경락대금대출을 취급시 해당 담보물에 차주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가계일반자금대출로 취급하여야 함에도 기업시설자금대출로 취급하여 적정 담보여력 대비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였음.

부동산 경락자금 대출 취급 부적정

- 차주의 담보물에 경락자금대출을 취급하였으나 낙찰가율, 실거래가 등을 조사하지 않았으며, 조사 미흡으로 고가로 경락받았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추가 대출을 취급하였음.

< 관련법규 >

-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 제1편 제15조(대출상당), 제57조(담보·거래방식·용도 등에 따른 분류), 제151조, 제3편 제2조(업무취급 원칙)
-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(예)」 제5편 제145조의2(유의사항)
- 「상호금융 여신규정」 제10조(심사 및 승인),
- 「회원조합 감사규정」 제31조(직원에 대한 제재)
- 「회원조합 징계·변상업무처리규정」 제12조 “징계양정기준표”